

[별표 1]

현장대응부서 (제8조제1호 관련)

1. 긴급구조지휘대	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 제16조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(각 시도별 명칭의 여하를 불문한다)
2. 119안전센터, 구조대, 구급대 등	가. 「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0조에 따른 “119특수구조대”, 같은 영 제21조에 따른 “119화학구조센터”
	나.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·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, 같은 영 제9조에 따른 119지역대
	다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119구조대
	라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119구급대
3. 119구조견대	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4에 따른 119구조견대
4. 119항공대	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119항공대
5. 119종합상황실 등	가. 「소방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“119종합상황실”
	나. 「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“119구조상황실”
	다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른 “구급상황관리센터”
6. 현장대응 관련 부서	가. 「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표 7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“119재난대응과”, “현장대응단”(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시·도별 직제에 따라 같은 기능을 하는 부서를 포함한다) 나. 「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표 7 제7호에 따른 “119재난대응단”(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시·도별 직제에 따라 같은 기능을 하는 부서를 포함한다) 다. 「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표 7 제9호가목에 따른 “대통령 경호처 소방대”